

判例 및 審査決定例

地方稅關聯 行政自治部 審査決定例

보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1. 2001. 9. 24. 제2001-448호(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득세 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장부 영치 등으로 인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자체를 신고납부하지 못하고 기한연장 승인을 받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로 기한연장 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소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6,657,043원을 확정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

한 소득세할 주민세 6,798,8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미 소득세할 주민세본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6,249,250원을 2000. 8.30.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 1. 4.

당초 부과처분을 소득세할 주민세 549,590 원(가산세 부분)으로 직권 감액경정하고 이를 2001. 2. 1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이미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2000.12.10. 다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지함에 따라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착오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부과취소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후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감액된 세액으로 독촉장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임을 알았으므로 사실상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2001.2.12.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서울특별시장이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한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도 각각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당초의 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합소득세에 대하

여는 신고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고, 연장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서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친족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장부가 압수 및 영치됨에 따라 1999년 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2000.7.31.까지 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하고, 그 연장신청한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8.30.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당초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액한 세액으로 2000.2.12. 다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산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은 날을 처분이 있

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 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는 본세의 납부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미 이행한 상태이었는데도, 처분청이 다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으로 부과지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감액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본세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가산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에 새로이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이를 각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하겠으며,

둘째,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소득세법상의 신고기한의 만

료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를 과세표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친족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장부 압수 및 영치로 인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자체를 신고납부하지 못하고 소득세법상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법정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2001.9.24. 제2001-482호(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물류센타를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류센타를 건축할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관리법원이 사업 추진을 불허함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소

가.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류센터 및 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7.10.15. 경기도 이천시 ○○읍 ○○리 435-8번지와 19필지 토지 59,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02,433,539원)에 구 지방세법(2000. 12.29. 법률 제 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4,633,620원, 농어촌특별세 12,341,400원, 합계 146,975,0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7.18.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85년부터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정관리기업으로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물류수요가 높은 수도권 인접지역에 물류센터 및 창고를 건립하고자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토지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 취득후 개발행위 신고와 건축설계 및 토목공사 설계를 거쳐 현재 물류센터 운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 진행중인 상태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

여 각종 준비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던 중 1997년말 IMF사태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물류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채권단 및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토지매입 경위와 청구인이 법정관리 기업인 점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 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과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물류센타 및 창고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994.12.19과 1995.11.4. 및 1996.2.17. 3차례에 걸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1997.10.1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 취득이전에 이미 물류센타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마친 상태에서 1997.12.5.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기불황과 자금사정으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법인으로서는 물류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물류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불황으

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물류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1998.5.19에 물류센타 및 창고를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다음 날 관리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단순한 자금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지만, 청구인이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관리법원이 토지 취득시에는 허가를 하였다가 그 후에 경제불황 등에 따라 사업추진을 불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